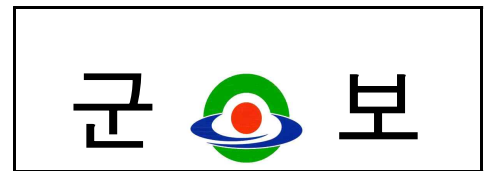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96호 2022. 10. 13.(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1262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2.4.20.)에 따라 신설된 조문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44(2022. 2. 24.)호와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위임 미반영 사항 정비 및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등 정비(안 제5조)

-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사항으로 규정

나.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공개 의무 명시(안 제7조)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안 제12조)

- 1건당 공유재산(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의 범위 신설

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대부 가능한 사항 정비(안 제19조의2, 제24조의2)

-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농특산물 등으로 정비

마. 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3)

- 이동영업 사업자가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은 위탁 가능

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의2)

- 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사.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정비(안 제28조)

- 「초지법」 제 18조에 따른 사항 신설 등

아.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정비(안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에 따른 산출기준 정비

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사항 정비(안 제32조)

- 영 제17조제7항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감면 사항 신설 등

차.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사항 추가 신설(안 제38조)

-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카.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사항 추가 신설(안 제40조)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수의 계약으로 매각 가능

타.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조문삭제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9조의2, 제26조, 제32조 및 제32조의2)

파. 상위법령 규정 용어 불부합 사항 정비(안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제40조)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실경작자 → 농업인 등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02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 보내실 곳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 054-650-6138, 팩스 : 054-650-6139
- 전자우편 : jh2920@korea.kr

라.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호선하여 선정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영 제7조의2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를 “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장가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7.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제7조 중 “영 제52조”를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영 제52조”로, “공개하는 공유재산”을 “공개하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

는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6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대상”을 “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20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사용·수익을 허가하는”을 각각 “사용허가하는”으로 한다.

1.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개모집할 때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대장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을 “사용허가대장을”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항”을 “제1호 및 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
4. 연구시설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제26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를 “영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 제30조제2항 단서 중 “다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을 “따른”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에 의한”을 “운영기준 별표3에 따른”으로 한다.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고 한다) 별표 3을 따른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을 “제13조의2제3항”으로, “사용·수익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사용·수익 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46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 중 “당해사용·수익허가”를 “당해 사용허가”로 한다.

제3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자에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 지식 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
4. 연구시설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

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 ----- ----- -----.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u>호</u> 선하여 선정한다.	1. ----- ----- ----- ----- 호 선한다.
2.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 -----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
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생 략)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
상대부

<신 설>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 략)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
산 취득·처분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

3. 법 제11조-----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
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7.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② -----

1. (현행과 같음)

2. -----

----- 토지의 취득·처분

3. 재산가액 -----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군수
는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에게 공개하는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① 법 제10조 및 영 제
7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을 군의
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
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수립
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내
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략)

<신설>

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
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
야 하며, 영 제52조--- 공개하
는 공유재산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① 법 제10조의2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는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
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략)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

제공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

제공미터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목 개정]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사용허가대상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허가-----
-----.

1. 2.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 설>

2. 제1호에 따른 예천군 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생 략)

-----, ----- 사용허가-----

-----.

1.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3. 제1호 및 제2호-----
-- 사용허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

1. -----
----- 사용허가하
는 -----

2. (현행과 같음)

3. 예천군이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신 설>

3. -----
----- 사용허가하
는 -----

제19조의3(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영 제13조 제3항제19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개모집할 때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사용허가) -----
-- 사용허가-----
-----.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허가-----

6. 사용허가-----

7.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허가대장의 비치) --

---- 사용허가대장-----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용허가-----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허가-----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① -----

-----.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신 설>

2. 제1항에 따른 예천군 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본조 신설]

<신 설>

1.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3. 제1호 및 2호-----
-- 경우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
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
 진법」을 적용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
 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
 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
 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
 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작 제

3. ~ 6. (생 략)

<신 설>

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
 4. 연구시설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기업부설 연구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농업인(「농업·농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
한다. 이하 같다)-----

 --

3. ~ 6. (현행과 같음)

7.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따른 -----

----- 감정평가법
인등이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감정평가법
인등-----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재산 운영기준」 (이하 “운영기준”이라고 한다) 별표 3을 따른다.

<삭 제>

<삭 제>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삭 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② -----
----- 운영기준 별표3에
따른 -----

-----.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13조의2제3항-----

----- 사용허가하는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는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본조 신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
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 신설]

<신 설>

④ (생략)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제2

② -----

----- 사용허가하
는 -----

④ 영 제17조제7항 또는 제35
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
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
의 10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
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
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삭 제>

2호에 따라 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의2(임대료의 감면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제32조의2(임대료의 감면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

1. 2.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사용
허가-----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
허가-----

-----.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략)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⑤ (생략)

<신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당해 사용허가 -----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 9. (생략)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6. -----

-----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

7. ~ 9.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
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
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
의 승인을 얻은 공장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제조
· 가공 · 판매 · 수출 등의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

4. 연구시설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기업부설 연구소